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7편 재판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일반 재판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7편 재판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일반 재판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칙</p>	
<p>【886】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p> <p>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p> <p>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p> <p>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p> <p>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p> <p>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p> <p>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p>	<p>【886】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⑦<좌동></p> <p>⑧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및 <u>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u> 하였을 때 <개정></p> <p>⑨~⑫<좌동></p> <p>⑬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u>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u>)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개정></p> <p>⑭~⑯<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p> <p>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p> <p>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p> <p>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p> <p>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p> <p>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u>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u>)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p> <p>⑭ <u>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u></p> <p>⑮ <u>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u></p> <p>⑯ <u>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u></p>		

현 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선거관리위원회</p> <p>【1019】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u>미주특별연회는 별도로 구성하되 2배수의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다.</u></p> <p>② <u>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u></p> <p>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p> <p>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p> <p>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⑥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그 교회의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p> <p>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선거관리위원회</p> <p>【1019】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u>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u></p> <p>② <u>감독회장은 교역자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개정></u></p> <p>③~⑤<좌동></p> <p>⑥ <u>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지방회 소속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u></p> <p>⑦ <좌동></p>	

현 행	개정안	비고
<p>【1020】 제6조(관장사항)</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2. 선거관리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4.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5.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8.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9.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10.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p>② 연회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할 하에 <u>감독, 감독회장</u>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1020】 제6조(관장사항)</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u>및 감독회장</u>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p> <p>1~10<좌동></p> <p>② 연회 선관위는 총회 선관위의 관할 하에 <u>감독·감독회장의</u>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p> <p>③ 총회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p>	
<p>【1022】 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선거 기간 중 약간 명의 일용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p>	<p>【1022】 제8조(간사) <u>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u> <개정></p>	
<p>【1025】 제11조(의결 정족수)</p> <p>①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p>	<p>【1025】 제11조(의결 정족수)</p> <p>① <좌동></p> <p>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u>등록을 거부하거나</u>,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p> <p>【1027】 제13조(피선거권)</p> <p>① <u>감독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② <u>감독회장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③ <u>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2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2항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해야 한다.</u></p> <p>④ <u>감독,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u></p> <p>⑤ <u>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u></p> <p>⑥ <u>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u></p> <p>⑦ <u>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p> <p>【1027】 제13조(피선거권)</p> <p>① <u>감독회장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2절 감독회장 제14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u></p> <p>② <u>감독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10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u></p> <p>③ <u>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u></p> <p>④ <u>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u></p> <p>⑤ <u>현행안 ⑤항과 <좌동></u></p> <p>⑥ <u>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 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등록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경과 또는 교회의 직무상 처벌을 받았거나, 국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u></p>	<p>③ 감독회장, 감독 임기와 동일</p> <p>④ 당회의 의결 정족수</p> <p>⑤ 조직과 행정법에 감독회장, 감독 자격에 있음.</p>

현 행	개정안	비고
<p>⑧ <u>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u></p> <p>⑨ <u>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u></p> <p>⑩ <u>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u></p>	<p><u>의해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 한 이. <개정></u></p> <p>⑦ <u>현행안 ⑦항과 <좌동></u></p> <p>⑧~⑩ <좌동></p> <p>⑪ <u>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 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회장이나 감독에 출마할 수 없다. <신설></u></p> <p>⑫ <u>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는 감독회장이나 감독에 출마 할 수 없다.<신설></u></p>	<p>⑪ 경과규정을 둬.</p>
<p>【1028】 제14조(선거권)</p> <p>① <u>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u></p> <p>② <u>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u></p> <p>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p> <p>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p> <p>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p>	<p>【1028】 제14조(선거권)</p> <p>① <좌동></p> <p>② <u>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u></p> <p>③~⑥<좌동></p>	<p>① 현행 ①과② 통합</p>

현 행	개정안	비고
<p>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성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p> <p>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p>		
<p>【1029】 제15조(선거인 명부)</p> <p>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2개월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p> <p>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p> <p>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1029】 제15조(선거인 명부)</p> <p>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개정></p> <p>②~③<좌동></p>	
<p>【1030】 제16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u>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u>,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p>	<p>【1030】 제16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개정></p>	<p>임기와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후보자의 등록</p> <p>【1031】 제17조(후보자의 등록)</p> <p>① <u>감독, 감독회장 후보자</u>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후보자의 등록</p> <p>【1031】 제17조(후보자의 등록)</p> <p>① 감독회장 . 감독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1067】 제3조(연회 분할의 요건) 연회 분할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연회의 분할은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800개소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350개소 이상, 정회원이 200명 이상, 입교인이 7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p> <p>② 지역 특성상 필요에 의하여 개체교회 수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선교연회는 관리자를 둔다.</p> <p>③ 미주연회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주특별연회라 호칭하고, 유지재단설립과 은급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총회 산하 타 위원회에는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1067】 제3조(연회 <u>분할의</u> 요건) 연회 분할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연회의 분할은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u>1500개소</u>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u>700개소 이상, 정회원이 500명 이상, 입교인이 20만 명</u>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개정></p> <p>② ~③ <삭제></p>	<p>① 연회 분할 요건 강화</p>
	<p>【000】 제6조(연회 통합의 절차) 연회 통합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p> <p>① 연회 통합 건의안이 연회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연회전체회의에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신설></p> <p>② 입법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연회 통합 건의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법 별표 개정안을 예비심사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신설)</p> <p>③ 입법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 통합에 관한 별표 개정안을 의결한다.(신설)</p>	<p>통합 절차 신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070】 제6조(연회소속 재산 등의 처리) 연회 <u>분할</u>에 수반되는 재산의 귀속문제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한다.</p>	<p>【1070】 제7조(연회소속 재산 등의 처리) 연회 <u>분할 및 통합</u>에 수반되는 재산의 귀속문제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방 경계</p> <p>【1071】 제7조(지방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방 경계</p> <p>【1071】 제8조(지방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u> <개정></p>	
<p>【1072】 제8조(지방 분할의 요건)</p> <p>① 지방 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u>45개소</u> 이상이 되고 정회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p> <p>② 지방 개체교회의 수가 <u>35개소</u> 이상일 경우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지방과 통합하여 분할 할 수 있다.</p>	<p>【1072】 제9조(지방 분할의 요건)</p> <p>① 지방 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u>60개소</u> 이상이 되고 정회원 <u>30명</u>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개정></p> <p>② 지방 개체교회의 수가 <u>45개소</u> 이상일 경우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지방과 통합하여 분할 할 수 있다. <개정></p>	지방 분할 요건 강화 의회법 확인
<p>【1073】 제9조(지방 분할의 절차) 지방 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p> <p>① 지방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u>3분의 2 이상의</u>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p> <p>② 연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 분할 건의안을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p> <p>③ 연회는 지방 분할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073】 제10조(지방 <u>통합과</u> 분할의 절차) 지방 <u>통합과</u> 분할은 <u>다음의</u> 절차에 따른다. <개정></p> <p>① 지방 <u>통합과</u>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u>과반수 이상</u>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074】 제10조(지방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지방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1074】 제11조(지방 통합 및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u>지방 통합 및 분할로 인하여</u>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 (2015. 10. 30)</u></p> <p>【0000】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연회 경계	<별표> 연회 경계	
<p>【1083】 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서울남연회 경계는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남태평양, 중국선교 16개 지방으로 한다.</p>	<p>【1083】 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서울남연회 경계는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u>강서, 강서동</u>,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남태평양, <u>호주선교</u>, 중국선교 <u>18개 지방</u>으로 한다. <개정></p>	
<p>【1084】 제3조(중부연회 경계) 중부연회 경계는 인천동, 인천서, 인천남, 인천북, 주안, 인천중앙, 연수동, 연수서, 부평동, 부평서, 새인천, 새인천북, 남동, 구월, 부천동, 부천서, 부천남, 부천북, 시흥남, 시흥북, 파주, 고양, 일산동, 일산서, 강화동, 강화서, 강화남, 강화북, 김포, 옹진, 중국 31개 지방으로 한다.</p>	<p>【1084】 제3조(중부연회 경계) 중부연회 경계는 인천동, 인천서, 인천남, 인천북, 주안, 인천중앙, 연수동, 연수서, 부평동, 부평서, 새인천, 새인천북, <u>남동, 남동서</u>, 구월, 부천동, 부천서, 부천남, 부천북, 시흥남, 시흥북, 파주, 고양, 일산동, 일산서, 강화동, 강화서, 강화남, 강화북, 김포, 옹진, 중국 <u>32개 지방</u>으로 한다. <개정></p>	
<p>【1085】 제4조(경기연회 경계) 경기연회 경계는 수원권선동, 수원권선서,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팔달, 용인동, 용인서, 안양, 안양동, 군포, 광명, 새광명, 안산, 안산동, 안산남, 안산대부, 사강, 남양, 화성, 오산, 오산서, 평택, 평택서, 평안, 경기남 25개 지방으로 한다.</p>	<p>【1085】 제4조(경기연회 경계) 경기연회 경계는 수원권선동, 수원권선서,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팔달, 용인동, 용인서, 안양, <u>평촌</u>, 군포, 광명, 새광명, 안산, 안산동, 안산남, <u>안산서</u>, 안산대부, 사강, 남양, 화성, <u>화성동</u>, 오산, 오산서, <u>평택동, 평택서, 평택남, 평택북, 안성</u> <u>28개 지방</u>으로 한다.(26개)<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086】 제5조(중앙연회 경계) 중앙연회 경계는 가평, 광주, 광주동, 구리, 남양주, 분당, 성남, 성남동, 양주, 양평, 여주동, 여주서, 연천, 의정부, 의정부동, 이천남, 이천북, 이천중앙, 포천, 유럽 20개 지방으로 한다.</p>	<p>【1086】 제5조(중앙연회 경계) 중앙연회 경계는 가평, <u>광주하남</u>, 광주동, 구리, 남양주, <u>동두천</u>, 분당, 성남, 성남동, 양주, 양평, 여주동, 여주서, 연천, 의정부, 의정부동, 이천남, 이천북, 이천중앙, 포천, 유럽 <u>21개 지방으로</u> 한다. <개정></p>	
<p>【1089】 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금산, 세종,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일본 20개 지방으로 한다.</p>	<p>【1089】 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u>대전중앙, 대전서북, 대전유성북</u>, 금산, 세종,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일본 <u>23개 지방으로</u> 한다. <개정></p>	
<p>【1091】 제10조(삼남연회 경계) 삼남연회 경계는 부산동, 부산서, 대구, 마산동, 마산서, 경북동, 경북북, 한려, 진주, 울진, 울산, 경북서, 제주, 필리핀선교 14개 지방으로 한다.</p>	<p>【1091】 제10조(삼남연회 경계) 삼남연회 경계는 <u>부산동, 부산서, 부산남</u> 대구, <u>창원동, 창원서</u>, 경북동, 경북북, 한려, 진주, <u>제주</u>, 울진, 울산, 경북서, 필리핀선교 <u>15개 지방으로</u> 한다. <개정></p>	
<p>【1092】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 미주특별연회 경계는 뉴욕, 시카고, 미동부, 캐나다, 남가주, 미중북부, 미중부, 미서남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캐나다서, 뉴욕북, 미서북부 13개 지방으로 한다. 단, 이외의 국외지방은 국내 해당 연회에 편입시킨다.</p>	<p>【1092】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는 <u>미주특별연회의 자치법에 준한다.</u><개정></p>	
<p>【1093】 제12조(호남선교연회 경계) 호남선교연회 경계는 전주, 전남동, 전남서, 군산, 익산, 전북, 광주, 여수 8개 지방으로 한다.</p>	<p>【1093】 제11조(호남선교연회 경계) 호남선교연회 경계는 전주, 전남동, 전남서, 군산, 익산, <u>전북서남</u>, 광주, <u>여수광양</u> 8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0편 과정법</p>	<p>제10편 과정법</p>	<p>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p> <p>【1098】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p> <p>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u>서리</u> 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p> <p>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가 확정되면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다만, 수련목회자로 정회원이 된 이는 1년을 초과하지 않고는 부담임 목사로 임명될 수 없다.</p> <p>③ 군목사관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p> <p>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역자는 파송 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p> <p>⑤ 수련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 및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p> <p>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p> <p>【1098】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p> <p>① <좌동></p> <p>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u>목사 안수를 받은 후 본 교회나 타 교회의 부담임자로, 또는 기관목사로 파송 받을 수 있다.</u> <개정></p> <p>③~⑥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p> <p>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p> <p>⑧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⑨ 수련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p> <p>【1103】 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u>아래</u> 각항과 같다.</p> <p>① 매년 감리회의 교회성장계획과 개체교회와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목회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회에 통보한다.</p> <p>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발한다.</p> <p>③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p> <p>④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실시한다.</p> <p>⑤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해에 파송 받을 수련목회자의 수를 해당 연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교회에는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p> <p>⑥ 수련목회자로서 기관 파송을 받을 이의 서류를 심사하여 인준한다.</p> <p>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 세미나를 실시하며 지도목사의 지도보고 관리 등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p> <p>【1103】 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u>다음</u> 각항과 같다. <개정></p> <p>①~⑨ <좌동></p> <p>⑩ 총회 산하에 통합신학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구를 두어 연구한다.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⑧ 고시과목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⑨ 각 신학대학원의 정원 조절 문제를 협의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00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